국립대구박물관 종합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▣ 감사기간 : 2013. 6. 24. ~ 7. 5. (10일간)

▣ 감 사 반 : 감사담당관 외 4명 (실지감사)

▣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3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사례	현지조치
					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8	-	-	-	-	-	-	-	6	-	1	1	-	-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국립대구박물관)
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지 적 내 용</th><th>조 치 사 항</th></tr>
<tr><td>1</td><td>○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미 인수 등 유물관리 미흡

- 국립대구박물관으로 보관·위임된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중 미 인수 유물이 74,018점이며, 이중 장기 미 인수(2008년 이전) 유물은 55,729점으로 유물의 분실 및 훼손 우려 상존

[표]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·위임된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현황

(2013.8.31. 기준)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rowspan="2">합 계
(A+B+C)</th><th colspan="3">인수보관(A)</th><th rowspan="2">미인수(B)
(발굴기관 보관)</th><th rowspan="2">위탁보관
(C)</th></tr>
<tr><th>등 록</th><th>미등록</th><th>소 계</th></tr>
<tr><td>국가귀속발굴 매장문화재</td><td>230,073점</td><td>68,665점</td><td>85,008점</td><td>153,673점</td><td>74,018점</td><td>2,382점</td></tr>
</table>
- 대구박물관이 인수·보관하고 있는 국가귀속발굴매장문화재 153,673점 중 85,008점이 미 등록 상태로 있어 유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미흡</td><td>○ 통보

- 임시보관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인수 방안 등 강구

- 미 등록유물 정리 계획 수립 추진 및「소장유물관리규정」미비점 보완</td></tr>
<tr><td>2</td><td>○ 소장유물 및 수장고 출입 관리 부적정

- 국립대구박물관의 분임유물관리관 미 임명, 유물관리관 교체 시 인계인수 미 실시, 수장고 열쇠 관리 미흡, 유물 출·격납 시 수장고 관리일지 미 기록 등 「소장유물 관리규정」 위반

- 소장유물 중 보존처리 및 조사 분석을 완료한 유물 2,211점에 대해 보존처리 기록사항 등을 ‘통합표준유물관리시스템’에 미 입력</td><td>○ 주의요구 및 통보

- 「소장유물 관리규정」 위반에 대해 ‘기관주의’ 조치 및 업무담당자 ‘주의’ 조치

- 보존처리 및 조사 분석을 완료한 유물은 보존처리 기록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조치</td></tr>
</table>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3	○ **발간물의 위탁출판 계약 및 관리 부적정** - “상설전시 도록(2012년, 영문판)”의 판매정가를 20천 원~25천 원으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내부검토 없이 임의로 판매정가를 30천 원으로 승인하여 출판사에 유리하게 하였고,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 - 발간물 위탁출판업체 선정 시,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기획재정부)에 따라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, 기술평가만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-「국고금관리법」에 따라 세입은 국고에 납입하고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, 발간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(인세)를 현물로 징수하여 직접 배포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 - “아시아의 전통복식 특별전(2010.7.20.~9.26.)” 기간 중에 도록을 발간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‘자료집’ 형태로 약 20,000천 원을 들여 제작·배포하였고, 발간물을 불필요하게 많이 제작·구입하여 개인용으로 배포하거나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는 등 예산 낭비	○ **주의요구 및 통보** - 발간물의 판매정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‘주의’ 조치 - 발간물 위탁출판업체 선정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도록 통보 - 인세는 국고에 세입 조치하고 직접 사용하는 일 없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통보 - 발간물을 부적정하게 배포·관리하고, 예산 낭비에 대해 ‘기관주의’ 조치
4	○ **방재·방범 시설 운영 부적정** - 출입자 통제를 위해 ‘전자출입카드시스템’을 운영하고 있으나, 2013.4월 말부터 시스템 오류로 출입자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데도 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, 방재실은 ‘통제구역’이므로 관리책임자 명패 부착 및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미 이행 -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“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”을 마련한 후 감시카메라(CCTV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는데,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관리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감시카메라(CCTV) 60대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	○ **주의·개선요구** - 방재·방범 시설 운영 부적정에 대해 ‘기관주의’ 조치 및 업무담당자 ‘주의’ 조치 - 감시카메라(CCTV) 운영·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‘개선’ 조치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5	○ **비정규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** - 비정규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2010~2013. 5월말 기간 중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데도 임의로 특별채용(6명) 하였고, 채용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전형(또는 면접) 절차 없이 이력서만으로 채용 - 또한, 직원 채용 시, 당초 수립한 채용 기본계획의 채용 자격기준에 따라 등급 및 보수를 책정해야 하는데, 선발하고 난 후에 학력에 따라 등급을 재적용하여 보수 책정 - 채용자격(학력, 경력, 자격증 등)에 대한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는데, 세부기준 없이 심사자의 편견 또는 주관에 따라 심사	○ **주의요구 및 통보** - 비정규직원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'주의' 조치 - 서류전형 시 심사자의 편견 배제 및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강구
6	○ **물품관리 업무 소홀** -「물품관리법」제19조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, 2011년 및 2012년에는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'활용' 또는 '불용대상'으로 분류한 후 관리하여야 하는데, 모든 물품을 '활용'으로 일괄 분류한 채 수량만 파악하는 등 재물조사 실시 소홀 - 이로 인하여 1994. 6. 21. 구입한 냉방기 등 44개의 물품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창고 등에 방치하고 있음 -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0년도에 취득한 진열장 등 356개의 물품에 대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물품관리 소홀	○ **권고** - 재물조사 시 물품의 보관 상태도 함께 파악하고, 내용연수 경과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 처분토록 조치 -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착하여 관리하는 등 향후 물품관리에 철저토록 조치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7	○ **국고 예산 집행 부적정** -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예산집행 지침」 따라 예산 이용·전용·내역 변경 시에는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사전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('10년, '12년 5건 13,825천 원) - 세출예산은 용도별 세목에 맞추어 집행해야 하며, 차량 임차 등은 임차료에서, 동호인회 활동지원은 복리후생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일반수용비('12년 총 40건 9,300천 원)에서 집행 -「소득세법」 따라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하여야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('11년~12년 14건 8,720천 원)	○ **주의요구 및 통보** -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,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'기관주의' 조치하고,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행하도록 조치
8	○ **외부강의 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복무관리 부적정** - 지방박물관 직원이 외부강의, 평가, 자문 등으로 대가를 받을 경우 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를 박물관 행동강령책임관인 '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장'에게 해야 하는데도 권한이 없는 '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장'에게 신고 ※ 2010년~2013년 6월 : 총 26건 - 또한,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복무관리는 개인 연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공무출장으로 처리 ※ 2010년~2013년 6월 : 3건 (전·현직 대구박물관)	○ **주의요구** -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복무관리 부적정에 대해 '기관주의' 조치